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차현주 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35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연구·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(SaaS)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(교육, 설문, 금융기술연구)를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					
	○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(법령해석 200337).					
	□ 따라서, 귀 사가 연구·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설문, 금융기술업무 등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					
	S II		의 중요도	평가, 클라우		절차 등)에 의거하여 ·자의 안전성 평가

- ※ 비조치의견서의 효력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